

## 2003년 특허행정 고객만족도 조사 결과

특허청은 특허행정 서비스의 질적 향상 및 제도개선을 위해 특허행정 고객만족도 조사를 실시, 그 결과를 발표했다. 최근 6개월간 특허청 서비스 이용자 1000명을 대상으로 지난 5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2개월간 실시된 이번 조사에서는 전반적인 만족도가 지난 2000년 54.9%에서 8.5%p 향상된 63.6%를 보였다.

특허청은 이번 조사결과를 토대로 개선작업에 대한 각 실, 국별 조치계획을 수립하고 세부 개선작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주요결과 요약>

#### I. 종합평가

특허청 민원서비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55.1%로 '불만족한다' 9.4%보다 높게 나타났다. 2000년 본 연구소에서 조사한 특허청의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특허청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2000년(34.9%)보다 20.2%p 증가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000년(15.3%) 대비 11.9%p 감소했다.

#### II. 출원단계별 평가

① 각 출원단계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등록과정>차원 만족지수가 62.1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자출원>차원 60.4점, <문서출원>차원 60.2점, <심판과정>차원 58.2점, <심사과정>차원 55.1점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② <전자출원> 차원

- <전자출원>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60.4점으로 나타났다.
- <전자출원> 과정 항목 중에서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출원과정 각 단계별 내용 게재 방법'(55.0점)이었고, 그밖에 '서식 작성 방법'(62.9점)에 대한 만족도도 낮았다.
- 항목별 중요도는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출원과정 각 단계별 설명에 대한 이해' 항목이 27.0%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전자출원을 위한 S/W 다운로드 및 설치방법'(22.2%), '출원 소요 시간'(20.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핵심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홈페이지 출원 각 단계별 설명' 및 '출원 소요시간' 항목에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요구되었는데, 특허업무의 특성상, 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서식이 타 기관보다 복잡하게 구성되어 있다. 특히, <홈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서식견본에 대한 만족도가 낮았는데, 특허청 출원에서 <문서출원>보다 <전자출원>의 비율이 높은 업무의 성격을 고려했을 때, 홈페이지에서 각 단계별 서식작성 방법에 대한 상세하고 자세한 설명이 요구되고 있다.

##### ③ <문서출원> 차원

- <문서출원>과정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60.2점으로 나타났다.
- <문서출원> 과정 중 가장 문제가 있는 항목은 '출원 소요시간'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중요도는 '출원 담당 공무원의 태도'가 21.3%로 가장 중요했고, 다음은 '출원에 필요한 서식 작성방법 용이성'(15.0%), '출원과정 각 단계별 내용 게재 방법 용이성'(14.7%)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④ <심사과정> 차원

- <심사과정>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55.1점으로 7개 차원 중 가장 낮은 만족지수를 보였다.

- <심사과정> 각 항목 중에서 가장 문제가 있는 항목은 '심사소요시간'(38.1점)으로 나타났다.
- 항목별 중요도는 '심사관의 태도'가 26.2%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심사결과의 공정성'(25.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시, '진행과정'에 대한 설명', '의견제출통지서' 수령까지 소요시간', '심사소요시간' 항목의 만족도가 낮아 개선의 노력이 필요한 분야로 나타났다. 특허청 업무의 성격상 기간이 많이 소요되는 것은 당연한 상황이다. 그러나 민원인들의 입장에서 보면, 이러한 사항은 고려되지 않은 경우가 발생한다. 서비스의 핵심은 민원처리 기간을 단축하는 것이며, 만약 예상 기한내에 처리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민원인의 입장에서 민원인이 처리결과를 기다리는 것을 생각하여 지연이유를 설명하는 것에 있다.

⑤ <등록과정> 차원

- <등록과정>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62.1점으로 나타났다.
- <등록과정> 각 항목별 만족도를 보면, '등록 소요시간'(52.5점)과 '등록요금 적정성'(51.9점)에 대한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핵심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시, 항목 만족도가 낮아 개선의 노력이 요구되는 분야는 '연차 등록료 납부 및 권리의 소멸예고 통지제도', '등록요금의 적정성', '등록 소요시간' 항목으로 나타났다.
- 비용관련과 민원처리시간관련 만족도는 어느 부처의 평가에서나 낮은 만족지수를 보이고 있다. 민원인들에게 비용 책정에 대한 정확한 설명을 병행하여, 비용이나 민원처리시간관련 만족지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요구된다.

⑤ <심판과정> 차원

- <심판과정>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58.2점으로 출원 단계별 차원들 중 <심사과정>(55.1점) 다음으로 만족지수가 낮았다.
- <심판과정> 항목별로 볼 때, '심판내용의 공정성'(55.8점), '심판과정 소요시간'(52.9점) 항목의 만족도가 낮았다.
- 항목별 중요도는 '심사관의 전문성'이 29.7%로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나타났고, 다음은 '심결문에 기재된 심판문에 대한 쉽고 상세한 설명'(24.7%), '심판관의 태도'(2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핵심 개선사항 도출을 위한 포트폴리오 분석시, 시급한 개선이 요구되는 분야는 '심판내용에 대한 설명', '심판관의 전문성' 항목에서 중요도 대비 만족도가 낮아 개선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Ⅲ. 민원업무 서비스 평가

① <공무원 태도 관련>

- <공무원 태도 관련>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68.8점으로 7개 차원 중 만족지수가 가장 높았다.
- <공무원 태도 관련>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공무원 부정사례'에 대한 만족도가 80.7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공정성' 69.0점, '친절성' 67.9점, '신속 대응성' 67.3점의 순으로 나타났고, 특허청 공무원의 '전문성' 항목이 65.1점으로 가장 낮았다. 공무원의 출원업무 관련 전문성 증대를 위한 재고가 요구된다.
- 전체적인 특허청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0년 보다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0년 조사결과에서는 <공무원의 태도>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고, 특히 '친절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부분이었는데, 2003년 조사 결과 <공무원의 태도>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친절성'의 부분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② <홈페이지 관련>

- <홈페이지 관련> 차원에 대한 각 항목별 만족도와 중요도를 고려한 만족지수는 57.6점으로 전체 7개 차원 중 만족지수가 6번째로 낮았다.
- <홈페이지 관련> 차원의 각 항목별 만족도를 살펴보면, '홈페이지 제공정보 도움'에 대한 만족도가 64.3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특허넷 운영시간'(60.6점), '홈페이지 속도'(59.4점), '홈페이지 정보의 다양성/충실성'(57.5점), 'FAQ/Q&A 도움 정도'(55.0점), '정보제공 용이성'(53.9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고, '전문적 용어 이해용이성' 항목의 만족도가 50.1점으로 가장 낮았다.
- 항목별 중요도는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의 실질적 도움 정도'에 대한 중요도가 22.8%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각각의 정보에서 전문적인 용어들에 대한 이해'(18.0%)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 특허청 홈페이지에서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업무상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러한 정보를 획득하는 과정에서는 다소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 홈페이지의 재구성을 통해서 민원인들이 원하는 정보를 얻는데 필요한 시간을 절약시킴으로써, 정보제공에 대한 만족도 향상을 이룰 수 있다. 또한 최근 전자정부를 추구하는 상황에서 일반민원에서 전자민원으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또한 출원과정에서 '전자출원'의 비율이 '문서출원'의 4배 이상이 되는 것을 고려할 때, 인터넷 민원의 만족도 제고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IV. 고객의 소리

- 특허청에 바라는 개선사항으로는 '출원기간 단축'이 14.6%로 가장 많았고, 다음은 '홈페이지 관련'(12.4%), '출원/심사/등록업무 관련'(11.4%), '공무원/심사관/심판관 관련'(7.8%), '전자출원관련'(5.7%), '수수료/등록요금/연체료 등 비용 관련' (4.7%), '콜센터/민원업무 관련'(2.6%), '출원자를 위한 지원 관련'(2.3%), '변리사 관련'(1.2%), '자료/정보제공 관련'(0.8%), '지적재산권보호 관련'(0.6%), '지방사무소 확대 관련'(0.6%)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1.0%, 무응답: 34.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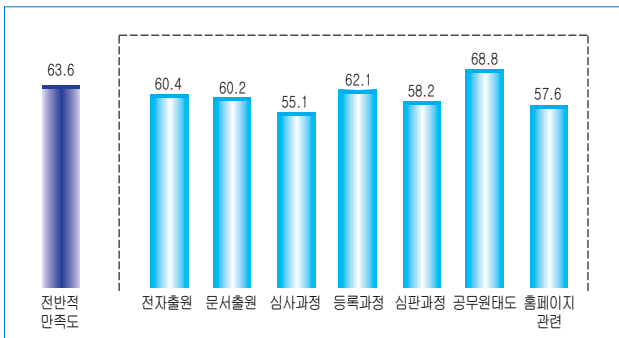
| 의견                  | 비율    |
|---------------------|-------|
| 출원기간 단축             | 14.6% |
| 홈페이지 관련             | 12.4% |
| 출원/심사/등록업무 관련       | 11.4% |
| 공무원/심사관/심판관 관련      | 7.8%  |
| 전자출원관련              | 5.7%  |
| 수수료/등록요금/연체료 등 비용관련 | 4.7%  |
| 콜센터/민원업무 관련         | 2.6%  |
| 출원자를 위한 지원 관련       | 2.3%  |
| 변리사 관련              | 1.2%  |
| 자료/정보제공 관련          | 0.8%  |
| 지적재산권보호 관련          | 0.6%  |
| 지방사무소 확대 관련         | 0.6%  |
| 기타                  | 1.0%  |
| 무응답                 | 34.1% |

<주요결과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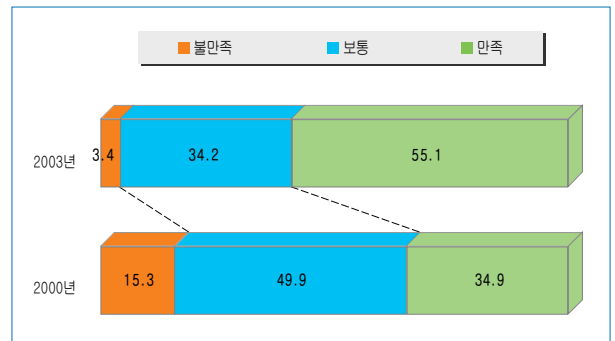
I. 종합평가

- 특허청 민원서비스 전반적인 과정에 대해 '만족한다'는 55.1%(매우 만족: 10.6% + 대체로 만족: 44.5%)로 '불만족한다' 9.4%(매우 불만: 2.7% + 대체로 불만: 6.7%) 보다 높게 나타났다. (보통: 34.2%, 잘 모름: 1.3%)

만족도 점수는 100점 만점에 평균 63.6점으로 나타났다.



- 2000년 조사한 특허청의 전반적 만족도와 비교했을 때, 특허청의 민원행정서비스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는 의견이 2000년(34.9%)보다 20.2%p 증가한 반면, '불만족한다'는 의견은 2000년(15.3%) 대비 11.9%p 감소했다.
- 전체적인 특허청 행정민원서비스 만족도는 2000년 보다 많이 향상되었음을 알 수 있는데, 특히 2000년 조사결과에서는 <공무원의 태도>가 많은 문제점으로 지적되었었고, 특히 '친절성'의 문제가 심각하게 고려되었던 부분이었는데, 2003년 조사 결과 <공무원의 태도> 부분에 대한 만족도가 가장 높았고, 특히 '친절성'의 부분도 가장 높은 만족도를 보여 이 부분에 대한 개선 사항이 가시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된다.
- 각 차원별 만족지수에서는 <공무원 태도 관련>차원의 만족지수가 68.8점으로 가장 높았고, 다음은 <등록과정> 차원 62.1점, <전자출원>차원 60.4점, <문서출원>차원 60.2점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편, <심판과정>차원(58.2점), <홈페이지 관련>차원(57.6점), <심사과정>차원(55.1점)의 만족지수가 상대적으로 낮았다. ☹



❖ 출원종류

|      | 사례수   | 만족도  | 전자출원 | 문서출원 | 심사과정 | 등록과정 | 심판과정 | 공무원 관련 | 홈페이지 관련 |
|------|-------|------|------|------|------|------|------|--------|---------|
| 전체   | 1,000 | 63.6 | 60.4 | 60.2 | 55.1 | 62.1 | 58.2 | 68.8   | 57.6    |
| 전자출원 | 209   | 63.5 | 60.4 | -    | 53.8 | 64.0 | 61.9 | 67.5   | 58.4    |
| 문서출원 | 404   | 64.4 | -    | 60.2 | 55.8 | 60.8 | 54.9 | 69.4   | 58.1    |

<전자출원>은 63.5점의 만족도를 보였고, <문서출원>은 64.4점으로 나타났다.

❖ 명부종류

|      | 사례수   | 만족도  | 전자출원 | 문서출원 | 심사과정 | 등록과정 | 심판과정 | 공무원 관련 | 홈페이지 관련 |
|------|-------|------|------|------|------|------|------|--------|---------|
| 전체   | 1,000 | 63.6 | 60.4 | 60.2 | 55.1 | 62.1 | 58.2 | 68.8   | 57.6    |
| 등록명부 | 318   | 63.3 | 61.3 | 59.9 | 55.6 | 62.3 | 57.7 | 69.7   | 58.7    |
| 민원명부 | 682   | 63.7 | 60.1 | 60.5 | 54.5 | 61.8 | 58.5 | 68.2   | 57.1    |

'등록명부'(63.3점)와 '민원명부'(63.7점) 간에 커다란 차이를 보이지 않음.

❖ 출원종류

|        | 사례수   | 만족도  | 전자출원 | 문서출원 | 심사과정 | 등록과정 | 심판과정 | 공무원<br>관련 | 홈페이지<br>관련 |
|--------|-------|------|------|------|------|------|------|-----------|------------|
| 전체     | 1,000 | 63.6 | 60.4 | 60.2 | 55.1 | 62.1 | 58.2 | 68.8      | 57.6       |
| 특허실용신안 | 265   | 64.0 | 59.7 | 62.3 | 56.0 | 63.3 | 59.9 | 69.7      | 59.6       |
| 의장     | 143   | 62.2 | 61.9 | 57.4 | 54.0 | 62.2 | 58.2 | 66.7      | 56.2       |
| 상표     | 175   | 64.9 | 61.2 | 59.2 | 54.2 | 59.8 | 53.4 | 69.0      | 57.4       |
| 기타     | 30    | 66.7 | 56.1 | 60.4 | 58.8 | 66.2 | 68.7 | 68.7      | 60.1       |

- '기타'가 6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의장'이 62.2점으로 상대적으로 낮았음.
- 출원방법에서 '특허/실용신안'은 <문서출원>(62.3점) 방법에 대한 만족도가 <전자출원>(59.7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고, '의장'과 '상표'는 <문서출원>보다 <전자출원>에 대한 만족도가 높았음.

❖ 민원인 유형

|             | 사례수   | 만족도  | 전자출원 | 문서출원 | 심사과정 | 등록과정 | 심판과정 | 공무원<br>관련 | 홈페이지<br>관련 |
|-------------|-------|------|------|------|------|------|------|-----------|------------|
| 전체          | 1,000 | 63.6 | 60.4 | 60.2 | 55.1 | 62.1 | 58.2 | 68.8      | 57.6       |
| 개인출원인       | 609   | 64.0 | 58.8 | 60.4 | 55.6 | 62.4 | 56.7 | 69.7      | 57.5       |
| 변리사         | 124   | 64.0 | 67.7 | 62.9 | 52.9 | 65.6 | 59.9 | 71.2      | 59.3       |
| 특허법률<br>전문가 | 99    | 60.0 | 65.4 | 56.5 | 51.4 | 59.5 | 62.1 | 61.7      | 56.5       |
| 기타          | 168   | 61.2 | 57.7 | 58.7 | 55.8 | 61.8 | 56.8 | 67.7      | 57.4       |

- 만족도는 '개인출원인'(64.0점), '변리사'(64.0점)의 만족도가 '특허사무소 직원'(60.0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출원단계에서 <전자출원>에서는 '변리사'의 만족도가 67.7점으로 가장 높았고, '개인출원인'의 만족도가 58.8점으로 가장 낮았음. 한편, <문서출원>에서는 '변리사'의 만족도가 62.9점으로 가장 높았고 <특허사무소 직원>의 만족

❖ 출원장소

|       | 사례수   | 만족도  | 전자출원 | 문서출원 | 심사과정 | 등록과정 | 심판과정 | 공무원<br>관련 | 홈페이지<br>관련 |
|-------|-------|------|------|------|------|------|------|-----------|------------|
| 전체    | 1,000 | 63.6 | 60.4 | 60.2 | 55.1 | 62.1 | 58.2 | 68.8      | 57.6       |
| 서울사무소 | 483   | 63.0 | 63.0 | 59.7 | 55.3 | 61.9 | 58.5 | 69.9      | 57.6       |
| 대전청사  | 189   | 66.0 | 63.5 | 61.6 | 55.4 | 63.2 | 57.8 | 68.7      | 58.3       |
| 전자출원  | 328   | 62.7 | 58.9 | 58.5 | 54.2 | 61.7 | 57.6 | 66.5      | 57.3       |

- 출원장소별로는 '대전청사'(66.0점)의 만족도가 '서울사무소'(63.0점)의 만족도보다 상대적으로 높았음.
- <공무원 관련>에서는 '서울사무소' 69.9점, '지방사무소' 68.7점으로 나타났음.



## 첨단기술유출 「산업스파이」 강력규제

특허청은 국내첨단기술의 해외유출사건이 다수 발생하여 국내기업의 피해가 크게 증가됨에 따라, 산업스파이에 대한 처벌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개정안을 마련하여 입법예고하였다.

최근 우리나라에서 해외로 유출되는 영업비밀은 반도체, 휴대전화 및 LCD관련기술 등 세계적으로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첨단 정보통신 핵심기술이 주종을 이루고 있고, 주로 유출되는 지역도 중국 대만 등 우리나라와 경쟁관계에 있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어서 우리기업과 국가경제에 큰 피해를 주는 등 심각한 사회 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이 가지고

이득은 그 재산상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의 벌금으로 철저히 환수하여 경제적 유인을 제거할 수 있도록 하고, 친 고죄조항을 폐지하여 설령 영업비밀 침해사범에 대한 고소 고발이 없더라도 이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인과 조직을 동시에 처벌할 수 있는 양벌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미수 예비 음모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신분법조항을 폐지하여 종전의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만을 처벌대상으로 하던 것을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확대하였으며, 보호대상도 종전 '기업의 기술상의 영업비밀'에서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였다.

이밖에도 상표법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등을 위반하여 인터넷도메인네임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용


### ※ 최근 국내 첨단기술 유출과 관련된 사건 ※

- 2003년 휴대전화와 PDA 등의 액정화면에 쓰이는 LCD관련기술의 중국유출 사전 적발
- 2002년 국내 벤처 기업이 개발한 CDMA 1x2.5세대용 무선통신용 모뎀기술의 중국유출
- 2001. 12 삼성전자 핵심 휴대폰 기술 중국유출 (유출자 70억원의 부당이득)
- 1998년 삼성 LG 반도체 전 현직 직원들이 제3세대 반도체핵심기술을 대만기업에 유출하여 막대한 국가적 손실을 입힌 사건 발생

있는 문제점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형량이 너무 낮다는 점이다. 가령, 산업스파이가 영업비밀을 해외로 유출하여 100억원의 부당이익을 얻는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처벌은 벌금형으로는 1억원 이하의 벌금밖에 처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는 반면, 미국의 「경제스파이법(Economy Espionage Act)」은 영업비밀을 미국외의 다른 국가로 유출한 조직에 대하여는 약 120억원(1,000만달러)의 벌금에 처하는 등 강력한 규제를 가하고 있어,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의 「경제스파이법」에 버금가도록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을 개정해야 한다는 각계의 요구가 많았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부당

하여 등록하는 행위인 사이버스쿼팅(cyber-squatting)을 규제하고, 타인의 유명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신설하여 이에 대한 규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특허청은 이 법에 대한 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그동안 관련업계, 학계, 수사기관 등으로부터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의 협의를 거쳤는데, 앞으로 20일간의 입법예고와 공청회(8~9월)를 거쳐 각계로부터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뒤, 정부안으로 최종 확정하여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주요 개정 내용

### 1. 영업비밀침해자에 대한 처벌강화

#### ■ 법정형량의 상향조정

| 구 분     | 현 행                     | 개 정 안                                    | 비 고   |
|---------|-------------------------|--|---|
| 국 외 유 출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7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입법례</li> <li>-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재산국외도피죄)</li> </ul> |
| 국 내 유 출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재산상 이득액의 2배이상 10배이하에 상당하는 벌금 |   |

\* 미국은 경제스파이법에 의해 영업비밀을 개인이 유출시 15년이하 징역 또는 50만달러(약6억)벌금, 조직이 해외유출시 1,000 만 달러(약 120억)의 벌금부과

#### ■ 처벌대상의 확대

##### • 신분범조항 폐지

- 현재 영업비밀침해의 주체를 기업의 "전 현직 임직원"으로 한정하고 있으나, "누구든지" 처벌대상이 될 수 있도록 규정
- \* 미국, 독일 등은 영업비밀침해죄를 비신분범으로 규정

##### • 보호객체의 확대

- 현재 보호법익 대상을 "기술상의 영업비밀"로 한정하고 있으나, "기업의 영업비밀"로 확대하여 경영상의 영업비밀침해도 처벌

##### • 미수 예비 음모죄 신설

- 현재 미수 예비 음모에 대한 처벌규정이 없으나 이를 신설해 선진국 수준으로 영업비밀보호 강화
- \* 미국, 독일 등은 미수 예비 음모 승낙 교사도 처벌

##### • 양벌규정(兩罰規定)의 적용

- 현재 부정경쟁행위에만 양벌규정을 적용하고 있으나, 영업비밀 침해행위에 대해서도 확대 적용해, 조직적 영업비밀 유출범죄에 적극 대처(미국, 독일 등)

#### ■ 친고죄 폐지

- 영업비밀은 개인 및 기업의 재산인 동시에 국가의 산업 기술적 경쟁력을 좌우하는 국가의 중요 자산의 성질을 함께 공유하고 있는 점을 감안, 비친고죄화

### 2. 부정한 목적의 도메인네임 규제 근거조항 마련

-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상표 등을 부정한 목적으로 도메인네임으로 등록 보유 사용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제(cyber-squatting)

### 3. 유명 상품의 '디자인 모방' 규제 근거조항 마련

- 부당하게 타인의 주지 저명한 상품의 디자인을 모방하는 행위 등을 부정경쟁행위로 규제 일본의 부정경쟁방지법에는 기규제중

### 4. 법률의 定義규정 개정

- 부정경쟁행위, 도메인이름에 관한 정의를 새롭게 규정
- \* 부정경쟁행위의 개념정의를 종전 '한정적 열거주의'에서 '일반 개괄주의'화하여 비유형적 부정경쟁행위 적극 차단

## “금년들어 특허출원 우선심사 신청 급증” 전년 대비 40% 증가

특허청에서 특허심사를 받는데 소요되는 기간을 3개월 정도(보통 23개월)로 줄일 수 있는 특허출원 우선심사제도를 이용하는 사례가 크게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선심사제도란 일반적인 특허출원보다 조기에 권리화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출원에 대하여 특허청이 심사청구 순위에 관계없이 우선적으로 심사하는 제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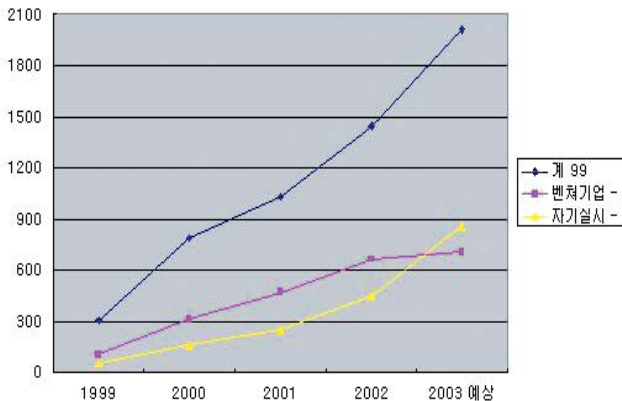
특히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자기실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이 지속적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벤처 붐의 진정으로 인하여 벤처 기업에 의한 출원에 대한 우선심사 신청 증가율은 다소 둔화되었다.

우선심사 신청인 구성은 중소기업 및 개인이 97%를 차지하고 있어 우선심사제도가 중소기업의 조기기술평쟁력 확보수단으로서 효율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허청은 1999년 이후 벤처기업에 의한 출원 및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 기술과 관련된 출원, 기술의 life-cycle이 짧은 전자거래와 관련된 출원 등을 우선심사 대상에 추가하고 증빙서류 제출을 간소화하는 등 우선심사제도의 활용을 촉진시키고자 노력해오고 있다.

앞으로 특허권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하는 경우, 실용신안 선등록제도보다는 우선심사제도를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미국, 일본, 유럽특허청에서도 우선심사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이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우선심사제도 활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 연도별 우선심사 신청건수

'99년 이후 우선심사 대상을 확대하는 등 우선심사 요건을 완화한 결과 '98년 100건 미만에서 '02년 1,442건으로 신청이 증가하였고, '03년 상반기에도 급증

|         | '97년 | '98년 | '99년 | '00년 | '01년  | '02년 | '03월6년 |
|---------|------|------|------|------|-------|------|--------|
| 우선심사신청건 | 95   | 99   | 305  | 787  | 1,026 | 1442 | 1006   |

### 우선심사 대상별 신청 현황

단위:건

| 년도     | 계     | 제3자 실시 | 방위 산업 | 공해 방지 | 수출 촉진 | 직무 발명 | 벤처 기업 | 신기술 품질 인증 | 우선권 주장 | 자기 실시 | 전자 거래 | 기타 |
|--------|-------|--------|-------|-------|-------|-------|-------|-----------|--------|-------|-------|----|
| '98    | 99    | 45     | 1     | 33    | 6     | 12    | -     | -         | -      | -     | -     | 2  |
| '99    | 305   | 34     | 3     | 52    | 14    | 5     | 104   | 6         | 28     | 54    | -     | 5  |
| '00    | 787   | 51     | -     | 34    | 9     | 3     | 310   | 11        | 48     | 160   | 155   | 6  |
| '01    | 1,026 | 29     | 3     | 70    | 14    | 9     | 467   | 13        | 55     | 247   | 114   | 5  |
| '02    | 1,442 | 32     | 1     | 116   | 14    | 10    | 661   | 23        | 38     | 448   | 88    | 11 |
| '03.6월 | 1,006 | 32     | 1     | 58    | 18    | 11    | 352   | 9         | 44     | 429   | 51    | 1  |
| 계      | 4,665 | 223    | 9     | 363   | 75    | 50    | 1,894 | 62        | 213    | 1,338 | 408   | 30 |

### 우선심사 대상

- '90년 우선심사제도 도입 이후 국내 산업여건의 변화를 반영하여 '99년 벤처기업의 출원 등, '00년 전자거래와 관련한 출원, '01년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을 우선심사 대상에 포함시킴

| 우선심사 대상(총 10개분야)   | 비 고            |
|--|----------------|
| - 자기발명에 대한 제3자의 실시중인 출원<br>- 방위산업에 관한 출원<br>- 공해방지에 관한 출원<br>-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br>-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련된 출원 |                |
| - 벤처기업의 출원<br>-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br>-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br>- 자기실시 및 실시준비중인 출원                   | 1999. 7. 1. 추가 |
|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 2000. 7. 1. 추가 |
| -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br>(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준비중인 출원에 해당)   | 2001. 7. 1. 추가 |

## BM특허 출원 증가추세로 반전

지난 2000년 BM특허 출원 붐이 조성된 이후 세계적인 경기불황의 여파로 지속적인 감소추세를 보이던 BM특허 출원 건수가 2003년 상반기 큰 폭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BM특허 출원건수는 2,454건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26.7% 증가하였는데 이는 인터넷 쇼핑물 등을 통한 전자상거래가 크게 활성화되고, 특허권자가 BM특허를 전략적으로 활용하기 시작하면서 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결과로 보인다.

2003년도 상반기 출원을 세부 분야별로 살펴보면, 쇼핑물 및 거래시스템(468건), 금융서비스(155건), 교육 및 의료(136건), 경매 및 수주(127건), 광고 및 홍보(125건), 택배 및 경영관리(94건), 게임 및 오락(81건) 순이었다.

**표1. BM특허 출원현황**

(단위:건,%)

| 구분         | 1999년 |      | 1999년            |      | 2001년           |      | 2002년           |      | 2002년<br>(상반기) |      | 2003년<br>(상반기)    |      |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내국         | 978   | 86.3 | 9,655            | 97.6 | 5,388           | 90.4 | 3,616           | 85.3 | 1,660          | 85.7 | 2,175             | 88.6 |
| 외국         | 155   | 13.7 | 240              | 2.4  | 574             | 9.6  | 623             | 14.7 | 277            | 14.3 | 279               | 11.4 |
| 계<br>(증감율) | 1,133 |      | 9,895<br>(+773%) |      | 5,962<br>(-40%) |      | 4,239<br>(-29%) |      | 1,937          |      | 2,454<br>(+26.7%) |      |

\* BM특허 출원건수는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표2. 세부기술분야별 BM특허 출원현황**

(단위:건,%)

| 구분          | 2000년 |      | 2001년 |      | 2002년 |      | 2003년<br>(상반기) |      |
|-------------|-------|------|-------|------|-------|------|----------------|------|
|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건수             | 점유율  |
| 쇼핑물 및 거래시스템 | 2,098 | 21.2 | 1,014 | 17.5 | 883   | 20.8 | 468            | 19.1 |
| 광고 및 홍보     | 1,051 | 10.6 | 385   | 6.5  | 176   | 4.2  | 125            | 5.1  |
| 경매 및 수주     | 1,101 | 11.1 | 439   | 7.4  | 235   | 5.5  | 127            | 5.2  |
| 금융서비스       | 730   | 7.4  | 471   | 7.9  | 361   | 8.5  | 155            | 6.3  |
| 택배 및 경영관리   | 335   | 3.4  | 223   | 3.7  | 136   | 3.2  | 94             | 3.8  |
| 교육 및 의료     | 752   | 7.6  | 444   | 7.4  | 287   | 6.8  | 136            | 5.5  |
| 게임 및 오락     | 394   | 4.0  | 229   | 3.8  | 174   | 4.1  | 81             | 3.3  |
| 메일 및 메시지 전달 | 221   | 2.2  | 180   | 3.0  | 124   | 2.9  | 58             | 2.4  |
| 수요예측        | 400   | 4.0  | 185   | 3.1  | 109   | 2.6  | 36             | 1.5  |
| 시간관리 및 비서업무 | 31    | 0.3  | 16    | 0.3  | 7     | 0.2  | 2              | 0.1  |
| 교통제어        | 63    | 0.6  | 35    | 0.6  | 17    | 0.4  | 6              | 0.2  |
| 경호인내        | 16    | 0.2  | 18    | 0.3  | 9     | 0.2  | 6              | 0.2  |
| 원격계측        | 61    | 0.6  | 67    | 1.1  | 41    | 1.0  | 26             | 1.1  |
| 기타          | 2,642 | 26.7 | 2,227 | 37.4 | 1,680 | 39.6 | 1,134          | 46.2 |

2003년도 상반기 BM특허 등록건수는 525건으로 전년동기 대비 약 33.6% 증가했다.

이는 출원이 집중했던 2000년 이후 출원에 대한 심사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졌고, 심사관 출원에 따라 심사처리 건수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BM관련 등록의 94%(496건)가 내국인 출원건이며, 6%(2건)가 외국인 출원건으로 내국인의 등록률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표3. BM특허 등록현황**

(단위:건,%)

| 구분         | 1999년 |      | 1999년         |      | 2001년         |      | 2002년          |      | 2002년<br>(상반기) |      | 2003년<br>(상반기)  |      |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건수              | %    |
| 내국         | 147   | 74.6 | 133           | 76.4 | 265           | 78.4 | 694            | 89.4 | 316            | 80.4 | 496             | 94.5 |
| 외국         | 50    | 25.4 | 41            | 23.6 | 73            | 21.6 | 82             | 10.6 | 77             | 19.6 | 29              | 5.5  |
| 계<br>(증감율) | 197   |      | 174<br>(-12%) |      | 338<br>(+94%) |      | 776<br>(+129%) |      | 393            |      | 525<br>(+33.6%) |      |

\* BM특허 기술분야인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을 기준으로 함.

2003년 상반기 BM특허 분야의 특허결정률은 16.6%로 낮은 수준인데 BM특허 출원 중 특허 대상이 되지 않아 거절된 경우가 8.8%로 전기·전자 분야의 0.6%에 비해 매우 높은 편인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인간의 인위적인 결정 또는 인간의 행위, 순수한 영업방법, 추상적인 아이디어 등 특허대상이 되지 않는 것을 청구하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앞으로도 BM특허에 대한 출원인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전국순회지식재산권 설명회 등 각종 설명회를 통해 BM특허의 심사기준 및 심사사례에 대해 적극 홍보할 계획이나, 출원인도 특허청 홈페이지의 “인터넷 특허” 코너를 통해 BM특허의 심사기준과 심사사례에 대해 정확히 이해한 후 출원할 것이 요구된다.

**표4. BM특허 특허결정률**

(단위:%)

| 구분 | 2000년 |      | 2001년 |      | 2002년 |      | 2003년<br>(상반기) |      |
|----|-------|------|-------|------|-------|------|----------------|------|
|    | BM    | 전기전자 | BM    | 전기전자 | BM    | 전기전자 | BM             | 전기전자 |
| 합계 | 34.4  | 64.3 | 25.4  | 63.7 | 22.5  | 52.9 | 16.6           | 49.4 |

\* BM특허 기술분야인 국제특허분류 G06F 17/00, 17/30, 17/60, 19/00과, 전기전자 분야인 H Section을 기준으로 함.



**아시아에서 한국특허청의 국제특허심사 대행 역할 확대**  
 - 인도와 인도네시아의 국제출원에 대한 한국특허청의 특허심사 대행 -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은 2003. 8. 4(월) 인도 뉴델리에 서 라지바 라타 샨(Rajeeva Ratna Shah) 인도 상공부차관과 한·인도 특허청장회담을, 2003. 8. 7(목)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압둘 바리 아제드(Abdul Bari Azed) 인도네시아 특허청장과 한·인도네시아 특허청장회담을 각각 가졌다.

최근 아시아국가와의 경제협력 증가와 함께 많은 한국 기업들이 인도 및 인도네시아 등에 진출하였고, IT, BT 등의 분야에서 인도가 최근 괄목할 만한 성장을 하고 있어 이들 국가와 지식재산 분야의 상호협력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인도 및 인도네시아가 자국 국민의 국제 출원에 대한 국제 조사 및 국제예비심사를 한국특허청이 수행할 것을 요청하여 이번 청장회담을 통해 우리나라가 이를 수락키로 한 것이다.

이번 인도 및 인도네시아 양국과의 협정으로 필리핀, 베트남에 이어 4개국에 대해 국제특허심사를 대행할 수 있게 되

었는데, 이는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전문 인력과 특허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양국과의 협력은 1997년 우리나라가 세계 10번째로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국제출원에 대한 국제조사기관 및 국제예비심사기관으로 지정 받은 결과에 따라 이루어지는 것이다.

인도와 인도네시아는 우리나라의 특허행정정보시스템인 KIPOnet과 우리청의 특허행정정보화 컨설팅에 대해서도 깊은 관심을 나타내고 있는데 향후 이에 대한 논의도 본격적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이밖에도 인도 및 인도네시아와의 상호 투자 및 무역의 지속적인 확대를 위해서 발명진흥, 특허사업화, 지식재산 교육 훈련 등 한국의 발전된 특허행정 경험을 양국에 제공하는 등 지식재산 분야에서 긴밀한 협력이 기대되고 있다. 

**KIPRIS 검색가능 최종 데이터 현황**

(2003. 8. 14 현재)

| 구 분             | 종 류    | 기 준 일 | 정보제공범위      | 구 분 | 종 류     | 기 준 일 | 정보제공범위           |
|-----------------|--------|-------|-------------|-----|---------|-------|------------------|
| 특 허<br>/<br>실 용 | 공개서지   | 공 개 일 | 2003. 8. 9  | 의 장 | 등 록     | 공 고 일 | 2003. 8. 2       |
|                 | 공고서지   | 공 고 일 | 2003. 8. 9  |     | 공개(조기)  | 공 개 일 | 2003. 8. 6       |
|                 | 초 록    | 공 보 일 | 2003. 8. 9  | 심 판 | 1심 ~ 3심 | 청 구 일 | 2003. 8. 5       |
|                 | 전문이미지  | 공 보 일 | 2003. 8. 9  | 4권리 | 등 록     | 등 록 일 | 2003. 8. 9       |
| 상 표             | 서지/이미지 | 방식심사일 | 2003. 8. 6  | 4권리 | 중간처리    | 서류접수일 | 2003. 8. 13      |
| 특 허             | 생명공학   | 출 원 일 | 1980 ~ 2002 | 특 허 | KPA     | 등록·공고 | 1979.1 ~ 2000.10 |
|                 |        |       |             |     |         | 특허공개  | 2000.1 ~ 2003.2  |

**Patent 21 2003년 8월호**

(통권 제50호)

등록번호 : 서울 라09257  
 발 행 : 한국특허정보원  
 발행 및 편집인 : 민 경 탁  
 주 소 : 서울시 강남구 역삼동 647-9 한국지식재산센터  
 편집위원 : 이재정, 강치운, 노성열  
 기 획 : 최 승 중  
 광고문의 : 기획팀 (02-3452-8144)  
 디 자 인 : IDO (02-3445-9849)  
 인 쇄 : 삼원정판사

특허기술정보서비스 : [www.kipris.or.kr](http://www.kipris.or.kr)

선행기술조사서비스 : [www.forx.org](http://www.forx.org)



전화 : (02)3452-8144 FAX : (02)3453-5951